

제 호

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

- 기관(단체)명:
- 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:
- 대표자 성명:
- 기관(단체) 소재지:

「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시·도지사

직인